

## ○○중학교 공사대금(폐기물처리비) 청구 소송

소송종류	민사소송	법원명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나○○○○○○○ [2심]	사건유형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피고	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
판결선고일	[2심]2024. 5. 21.	비고	쌍방 상고포기 2024. 6. 7.확정
사건개요	<p>○ 원고는 가칭 ○○중학교 신축공사 현장 폐기물 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임</p> <p>○ 원고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계약수량보다 초과 발생한 폐기물에 대한 반출을 거부하였으나 공사감독관이 초과분에 대한 비용을 시공사에서 결제할 것이라며 폐기물반출을 요구하여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였고, 이후 시공사에 결제를 요청하였으나 시공사에서 대금지급을 거부하였는바, <b>초과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는 시공사와 발주처에서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며</b>, 시공사 및 발주처를 상대로 소를 제기함.</p>		
주문 (요약)	<p>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p> <p>가. 피고는 원고에게 21,782,12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3.부터 2024. 5.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p> <p>나.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청구와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p> <p>2.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사이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인천광역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p>		
판결요약	<p>○ 원고는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계약물량 초과 사실을 알렸으나 피고는 시공사와 협의하라고만 지시하고 공사비용에 계상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건설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할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고 오히려 포기각서 등을 근거로 원고의 계약상 이익과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p>		